



■ 건축법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1.4.1>

###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 허가서

※ 건축물의 용도/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.

건축구분	신축	허가번호	2018-건축과-신축허가-36		
건축주	이름				
대지위치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570 - 11 외 4필지				
대지면적	736.4 m <sup>2</sup>				
건축물명	주용도	공동주택(도시형생활주택(단지형태세대주택))			
건축면적	434.56 m <sup>2</sup>	건폐율	59.01 %		
연면적 합계	1,318.13 m <sup>2</sup>	용적률	179 %		
가설건축물 존치기간					

동고유번호	동명칭 및 번호	연면적(m <sup>2</sup> )	동고유번호	동명칭 및 번호	연면적(m <sup>2</sup> )
1	주건축물제1동	659.12			
2	주건축물제2동	659.01			

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허가신청서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허가서를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8조·제12조의2에 따라 교부합니다.

2018년 09월 06일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

